천·년·의·비·상
전라북도

도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도 보

호외 2022. 6. 30.(목)

www.jeonbuk.go.kr

조 례

○ 전라북도 조례 제5110호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1

규 칙

○ 전라북도 규칙 제3194호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8

발행 전 라 북 도 (편집 공보관실 ☎(063)280-2186)
(54968)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송 하 진 ㊞

2022년 6월 30일

전라북도 조례 제5110호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을 “한국소리문화의전당”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 중 “문화전당”을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공연”을 “공연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국내외”를 “국내·외”로 한다.

제4조 중 “특별한”을 “특별히”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사용료 납부등)”을 “(사용료 납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관·주최”를 “주최·주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환”을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반환”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때 : 전액”을 각각 “때: 전액 반환”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용예정일로부터 30일이전에”를 “사용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용자가”로, “때 : 전액”을 “때: 전액 반환”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사용예정일로부터 20일이전에”를 “사용 예정일 29일 전부터 20일 전까지 사용자가”로, “때 : 위약금”을 “때: 전액의”로, “잔액”을 “잔액 반환”으로 한다.

제6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및”을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시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위탁 기간 및 연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를 따른다”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회계연도개시”를 “회계연도 개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아니되며”를 “안 되며”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문화전당원”을 “전당”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목 외의 부분, 제5조제3항제1호, 제6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1항, 제7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5조제1항 및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전당”을 각각 “전당”으로 한다.
제12조 제4항의 “문화전당원”을 “전당”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사용료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사용료기준 (제5조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원/부가가치세 별도)

<table>
<tr><th rowspan="2">시설명</th><th rowspan="2">기준</th><th colspan="3">사용료</th><th rowspan="2">비 고</th></tr>
<tr><th>클래식
국 악
연 극
무 용</th><th>뮤지컬
오페라
복합장르</th><th>행 사
대중음악</th></tr>
<tr><td rowspan="3">모악당</td><td>오전</td><td>200,000</td><td>400,000</td><td>700,000</td><td rowspan="12">1. 토요일 오후, 일요일, 공휴일은 기준
사용료의 30%를 가산함.
2. 리허설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3. 익일의 공연(행사)준비를 위해 22:00 이후
사용시는 야간사용료의 50%를 가산함.
(1, 2항 미적용)
4. 공연(행사)을 위한 무대설치만 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준사용료의 30%로 함
5. 1시간 초과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함
6. 1회라 함은 오전,오후,야간, 철야중의 하나를 말함.
- 오전 09:00 ~ 12:00
- 오후 13:00 ~ 17:00
- 야간 18:00 ~ 22:00
- 철야 22:00 ~ 02:00
※ 새벽2시 이후의 대관은 승인하지 않음</td></tr>
<tr><td>오후</td><td>250,000</td><td>450,000</td><td>750,000</td></tr>
<tr><td>야간</td><td>300,000</td><td>500,000</td><td>800,000</td></tr>
<tr><td rowspan="3">연지홀</td><td>오전</td><td>70,000</td><td>170,000</td><td>350,000</td></tr>
<tr><td>오후</td><td>100,000</td><td>190,000</td><td>420,000</td></tr>
<tr><td>야간</td><td>120,000</td><td>220,000</td><td>450,000</td></tr>
<tr><td rowspan="3">명인홀</td><td>오전</td><td>50,000</td><td>100,000</td><td>150,000</td></tr>
<tr><td>오후</td><td>70,000</td><td>120,000</td><td>170,000</td></tr>
<tr><td>야간</td><td>90,000</td><td>150,000</td><td>200,000</td></tr>
<tr><td>국제회의장</td><td>1회</td><td colspan="3">200,000</td></tr>
<tr><td>야외공연장</td><td>1회</td><td colspan="3">500,000</td></tr>
<tr><td rowspan="2">전 시 실</td><td>1일,
평당</td><td colspan="3">기본료 500원
조 명 200원
냉.난방 800원</td><td rowspan="2">- 1일: 09:00 ~ 19:00
- 야간 : 19:00 ~ 24:00 (1일 사용료 추가)
- 냉방: 6월 ~ 8월 의무적 가동
- 난방: 12월 ~ 2월 의무적 가동
- 기온 급변시 사용자 결정</td></tr>
<tr><td>음향</td><td colspan="3">30,000원</td></tr>
</table>

2. 부대설비 사용료

(단위 :원/부가가치세 별도)

구 분 / 시 설 명			기 준	사용료	비 고 * 부대설비 사용료는 1공연(1일 1작품)을 기준으로 하며 리허설을 포함한다.
피아노	그랜드대형(외산)		1공연	80,000	-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피아노 조율은 1급 자격 소지자만 가능하며 사전 협의하여야 함
	그랜드대형(국산)		1공연	60,000	
	업 라 이 트		1공연	20,000	
조명시설	모 악 당		1시간	40,000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연 지 홀		1시간	30,000	
	명인홀(국제회의장)		1시간	20,000	
	조광기(외부기기용)		1일	500,000	
	무빙콘솔		1공연	200,000	
	무빙라이트		1대/1공연	50,000	
	LED PAR		1대/1공연	10,000	
	LED 무빙		1대/1공연	20,000	
	LED 스트로브 무빙		1대/1공연	20,000	
	PAR 64, 서스포즘,SL라이트		10대/1공연	20,000	
	PAR 46		1대/1공연	5,000	
	포그머신액		1L	10,000	
음향시설	녹음(CD,MD,DAT)		1공연	30,000	- 녹음외의 본 공연시 기기 사용도 동일 적용 - 녹음시 공테이프 사용자 준비 - 마이크로폰에 사용되는 건전지 사용자 부담 (리허설 포함)
	녹음(카세트테이프)		1공연	10,000	
	무선마이크		1일	20,000	
	유선마이크		1일	10,000	
	음향콘솔	단순재생	1일	30,000	
		메인콘솔	1일	500,000	
		확성	1일	50,000	
	모니터스피커		1일	30,000	
	외부출력		1일	30,000	
	프로젝터-자막기 (모악당)		1일	150,000	
	프로젝트-자막기 (연지홀,명인홀)		1일	100,000	
	무선인터컴(5채널)		1일	100,000	
	유선인터컴		1일	10,000	
영사기 (35m/m)	공연중 사용		1회	30,000	
	영화만 사용		1회	100,000	

(단위 :원/부가가치세 별도)

구분 / 시설명			기준	사용료	비고 * 부대설비 사용료는 1공연(1일 1작품)을 기준으로 하며 리허설을 포함한다.
효과장비	드라이아이스기		1대/1공연	20,000	- 1대 사용은 1회에 한함 - 재료 준비는 사용자 부담
	스모그기		1대/1공연	20,000	
	화니프로젝터		1대/1공연	50,000	
	핀스포트라이트(1kw)		1대/1공연	20,000	
	블랙라이트		1대/1공연	10,000	
	스트로브		1대/1공연	10,000	
	핀스포트라이트(3kw)		1대/1공연	30,000	
동시통역시설	동시통역시설		1식	200,000	- 수신기 1대당 500원씩을 별도 징수 - 1일 2회 이상 사용시는 1회 초과분에 대하여 50%를 할인함. (사전 승인없이 초과 사용시는 기본시설의 초과 사용료 시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회의용마이크		1기/1회	20,000	
	수신기(200조)		1회	100,000	
무대시설	음향반사판	고정식	1공연	30,000	- 덧마루와 무용장판은 1일 1회 셋팅/철거를 기준으로 함
		이동식	1공연	100,000	
	오케스트라피트		1회	30,000	
	회전무대		1공연	100,000	
	승강무대		1회	30,000	
	수평이동무대		1회	20,000	
	변형무대(계단,경사)		1회	50,000	
	덧 마 루		1일	100,000	
	보면대/접의자		1조/1일	2,000	
	무용장판	모악당	1일	150,000	
		연지홀	1일	100,000	
		명인홀	1일	50,000	
	합창 라이저		1일	100,000	
	덧마루-1,2단		1일	100,000	
	덧마루-3단		1일	150,000	
	덧마루-4단		1일	200,000	
	샤막		1공연	20,000	
	대 분장실		1일	30,000	
	세트바텐(10조)		1공연	20,000	
	리어,프론트 스크린		1공연	20,000	

(단위 :원/부가가치세 별도)

구 분 / 시 설 명		기 준	사용료	비 고 * 부대설비 사용료는 1공연(1일 1작품)을 기준으로 하며 리허설을 포함한다.
냉·난방	모 악 당	1시간	100,000	- 냉방 : 6월~8월은 의무적 가동 - 난방 : 12월~2월은 의무적 가동 - 기온 급변시 사용자 결정
	연 지 홀	1시간	70,000	
	명인홀(국제회의장)	1시간	50,000	
	연습실	1회	20,000	
	세미나실	1회	20,000	
	귀빈실	1회	20,000	
	연회장	1회	20,000	
	중회의장	1회	20,000	
빔프로젝터	15,000Ansi	1일	500,000	
	10,000Ansi	1일	400,000	
	7,000Ansi	1일	200,000	
	국제회의장	1일	40,000	
연습실	대 연습실(50평 이상)	1일	50,000	
	소 연습실(50평 이상)	1일	30,000	
국제회의장	중회의장	1일	100,000	
	프레스센터	1일	50,000	
	세미나실	1일	50,000	
연회장 사용료		1회	120,000	
귀 빈 실		1일	50,000	
분 장 실		1일	10,000	
중 계 료		1공연	200,000	

3. 기본 기술스탭

(단위 : 명)

구 분	공연장별	계	무대감독	무대진행	조명	음향	기계	비고
공 연	모악당	5	1	1	1	1	1	
	연지홀	5	1	1	1	1	1	
	명인홀	4	1	-	1	1	1	
설 치	모악당	5	1	1	1	1	1	
	연지홀	5	1	1	1	1	1	
	명인홀	4	1	-	1	1	1	

4. 인력 지원비

(단위 : 원)

구 분	인 력	사 용 료	비 고
효과기기 운용 - 핀 스포트라이트 - 파니프로젝터 - 드라이아이스 - 모그머시인	1인/일당	100,000	- 기본 : 09시~18시(8시간) - 야간근무 : 18시 이후 (50,000원 추가)
무대 지원		100,000	
조명 지원		100,000	
음향 지원		100,000	

【별표 2】 〈삭제 2016. 12. 30〉

전라북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송 하 진 ㊞

2022년 6월 30일

전라북도 규칙 제3194호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를 “운영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시설 등의 구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하 “전당” 이라 한다)의 시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기본시설: 공연장(모악당, 연지홀, 명인홀, 야외공연장), 국제회의장, 전시장
2. 부대설비
   가. 피아노,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동시통역시설, 영사기, 냉・난방시설, 효과장비, 무대시설, 동시통역시설, 빔프로젝터 등
   나. 그 밖에 공연・행사・ 교육・전시 등에 필요한 일체의 설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지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으로, “문화전당 및 분원자체”를 “전당자체”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문화전당 및 분원”을 “전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시전”을 “개시 전”으로, “기간내에”를 “기간에 따라”로, 같은 항 및 제4항 중 “의거”를 각각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전당의 시설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표 제1호서식 및 별표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때 에”를 “때에”로, “5일전”을 “5일 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전당 및 분원사용”을 “전당 사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문화전당 및 분원의 사용허가”를 “전당의 사용 허가”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문화전당 및 분원”을 “전당”으로, ““별표 제4호서식”에 의한”을 “별표 제4호서식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문화전당 및 분원”을 “전당”으로, “30일전”을 “30일 전”으로, “의하여 신청”을 “따라 신청”으로, “한다”를 “하며, 도지사는 이를 심사한 후 별표 제9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전당 및 분원”을 “전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08:00”을 “09:00”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시간중”을 “사용시간 중”으로 한다.

4. 심야 22:00부터 02:00까지

제6조 중 “문화전당 및 분원”을 “전당”으로, “의거”를 “따른”으로, “사용료에 대한”을 “사용료의”로, “계약기간내”를 “계약기간 내”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문화전당과 분원”을 “전당”으로, “면제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문화전당”을 “전당”으로, “감면하고, 분원에 대해서는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의 사용료를 면제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아니 하며, 사용기간은 공연장(문화전당”을 “않으며, 사용기간은 공연장(전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전당 및 분원”을 “전당”으로, “감면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도의 예산지원 없이 도 후원 명칭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 본문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에 따라”로, ““별표 제6호” 서식에 의한”을 “별표 제6호서식에 따른”으로, “문화전당”을 “전당”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9조 중 “문화전당 및 분원”을 “전당”으로, “회관”을 “전당”으로, “전기사용요율에 의한”을 “전기사용 요율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사용기간중에 문화전당 및 분원”을 “사용기간 중에 전당”으로, “강구”를 “마련”으로, “질 수 있다”를 “져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문화전당 및 분원”을 “전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전산발매”를 “전산 발매”로 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의한”을 “따른”으로, “협의하여”를 “협의하여 도지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전당 및 분원사용”을 “전당 사용”으로 한다.

제13조 중 “문화회관 및 분원”을 “전당”으로,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3호 중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밖의”를 “밖에”로,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을 “위해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15조 중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전당 및 분원”을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당”으로, “별표 제10호의 서식”을 “별표 제10호서식”으로 한다.

제16조 중 “문화전당 및 분원”을 “전당”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사업계획서등”을 “사업계획서 등”으로, “120일전”을 “120일 전”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지사는 조례 제8조에 따른 수탁기간 연장심사 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검토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신청시”를 “신청 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밖의”를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른”으로, “60일전”을 “60일 전”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제2항에 따라 의거”를 “제15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밖의”를 “밖에”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자체운영규정의 범위) 수탁자는 조례 제17조의 자체운영규정을 정하는 경우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협약체결한 수탁사무의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제19조 중 “문화전당 및 분원사용”을 “전당 사용”으로 한다.한국소리문화의전당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를 “운영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시설 등의 구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하 “전당” 이라 한다)의 시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기본시설: 공연장(모악당, 연지홀, 명인홀, 야외공연장), 국제회의장, 전시장
2. 부대설비
   가. 피아노,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동시통역시설, 영사기, 냉・난방시설, 효과장비, 무대시설, 동시통역시설, 빔프로젝터 등
   나. 그 밖에 공연・행사・ 교육・전시 등에 필요한 일체의 설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지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으로, “문화전당 및 분원자체”를 “전당 자체”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문화전당 및 분원”을 “전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시전”을

“개시 전”으로, “기간내에”를 “기간에 따라”로, 같은 항 및 제4항 중 “의거”를 각각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전당의 시설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표 제1호서식 및 별표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때 에”를 “때에”로, “5일전”을 “5일 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전당 및 분원사용”을 “전당 사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문화전당 및 분원의 사용허가”를 “전당의 사용 허가”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문화전당 및 분원”을 “전당”으로, ““별표 제4호서식”에 의한”을 “별표 제4호서식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문화전당 및 분원”을 “전당”으로, “30일전”을 “30일 전”으로, “의하여 신청”을 “따라 신청”으로, “한다”를 “하며, 도지사는 이를 심사한 후 별표 제9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전당 및 분원”을 “전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08:00”을 “09:00”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시간중”을 “사용시간 중”으로 한다.

4. 심야 22:00부터 02:00까지

제6조 중 “문화전당 및 분원”을 “전당”으로, “의거”를 “따른”으로, “사용료에 대한”을 “사용료의”로, “계약기간내”를 “계약기간 내”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문화전당과 분원”을 “전당”으로, “면제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문화전당”을 “전당”으로, “감면하고, 분원에 대해서는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의 사용료를 면제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아니 하며, 사용기간은 공연장(문화전당”을 “않으며, 사용기간은 공연장(전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전당 및 분원”을 “전당”으로, “감면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도의 예산지원 없이 도 후원 명칭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 본문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에 따라”로, ““별표 제6호” 서식에 의한”을 “별표 제6호서식에 따른”으로, “문화전당”을 “전당”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9조 중 “문화전당 및 분원”을 “전당”으로, “회관”을 “전당”으로, “전기사용요율에 의한”을 “전기사용 요율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사용기간중에 문화전당 및 분원”을 “사용기간 중에 전당”으로, “강구”를 “마련”으로, “질 수 있다”를 “져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문화전당 및 분원”을 “전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전산발매”를 “전산 발매”로 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의한”을 “따른”으로, “협의하여”를 “협의하여 도지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전당 및 분원사용”을 “전당 사용”으로 한다.
제13조 중 “문화회관 및 분원”을 “전당”으로,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3호 중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밖의”를 “밖에”로,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을 “위해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15조 중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전당 및 분원”을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당”으로, “별표 제10호의 서식”을 “별표 제10호서식”으로 한다.
제16조 중 “문화전당 및 분원”을 “전당”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사업계획서등”을 “사업계획서 등”으로, “120일전”을 “120일 전”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지사는 조례 제8조에 따른 수탁기간 연장심사 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검토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신청시”를 “신청 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밖의”를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른”으로, “60일전”을 “60일 전”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제2항에 따라 의거”를 “제15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밖의”를 “밖에”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자체운영규정의 범위) 수탁자는 조례 제17조의 자체운영규정을 정하는 경우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협약체결한 수탁사무의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제19조 중 “문화전당 및 분원사용”을 “전당 사용”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1-1, 별표 2, 별표 2-1, 별표3, 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별표 11, 별표 12호의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06. 4. 21〉 접수번호: 호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공연장 사용 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사용자)					
	주 소	E-mail:				
	대표이름		전화번호 (대 표)			
	대표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이름 팩스 번 호		담당자 전 화	
공연부분	공연(행사,교육)명					
	사용시설	□ 모악당 □ 연지홀 □ 명인홀 □ 야외공연장 (오전 9시~12시, 오후 13시~17시, 야간 18시~22시, 철야 22시~02시)				
	주요내용	시작 시간 : 시, 소요시간: 시간 입장료 징수유무 : □ 유료 □ 무료 (별지서식 행사계획서 첨부)				
대관구분 및 일자	대관구분	□ 정기대관 □ 수시대관 □ 기타 ( )				
		대 관 일 자			대 관 회 수 (오전/오후/야간기준)	
	준비대관	20 . . .~20 . . . (일간)			오전( ),오후( ),야간( ),철야( )	
	리허설대관	20 . . .~20 . . . (일간)			오전( ),오후( ),야간( ),철야( )	
	공연대관	20 . . .~20 . . . (일간)			오전( ),오후( ),야간( ),철야( )	
	철수대관	20 . . .~20 . . . (일간)			오전( ),오후( ),야간( ),철야( )	
	기타사항 (2지망)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접 수 증

접수번호: 호	신청인:	공연(행사)명 :
신청기간 1지망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2지망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별표 1-1］〈개정 2006. 4. 21〉 접수번호: 호

공 연 (행사, 교육) 계 획 서

주최 ☎	주관 ☎	후원 ☎

공연 (행사,교육) 개 요	공연(행사, 교육)명	제 목: 부제목:
	공연장르	☐ 클래식 ☐ 국악 ☐ 연극 ☐ 무용 ☐ 뮤지컬 ☐ 오페라 ☐ 복합장르 ☐ 대중음악 ☐ 세미나 ☐ 일반행사 ☐ 기타( )
	일 자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일간 회 공연) 시작 시간: (소요시간: 분)
	입 장 료 징수유무	☐ 유료 ☐ 무료
	예 매 처	티켓판매대행사
	문의처 전화	
출연 및 단체소개		
사 용 자 주요경력		
주요내용		
첨 부	☐ 공연(행사, 교육) 상세 줄거리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사본 ☐ 기타 공연관련 서류	

〔별표 2〕 〈개정 2006. 4. 21〉 접수번호: 호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실 사용 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사용자)					
	주 소	우편번호 :				
	대표이름		전화번호(대 표)			
	대표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담당자)		팩스	
전시부분	전시(행사)명					
	사용시설	기본 □ 메인홀/115평 □ 1실/195평 □ 2실/200평 □ 3실/120평 부속 □ 조명 □ 냉·난방 □ 마이크(대) □ 기타( )				
	전 시 주요내용	(별지서식 행사계획서 첨부)				
대관구분 및 일자	대관구분	□ 정기대관 □ 수시대관 □ 기타 ( )				
	설치대관	20 . . .~20 . . . (일간)		오전 9:00 ~ 오후 7:00		
	전시대관	20 . . .~20 . . . (일간)		오전 10:00 ~ 오후 6:00		
	철수대관	20 . . .~20 . . . (일간)		오전 9:00 ~ 오후 7:00		
	기타사항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 라 북 도 지 사 귀 하

접 수 증

접수번호: 호	신청인:	전시명 :
신청기간 1지망: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실) 2지망: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실)		

［별표 2-1］〈개정 2006. 4. 21〉 접수번호: 호

<table>
<tr><td colspan="4">전 시 계 획 서</td></tr>
<tr><td colspan="2">주최
☎</td><td>주관
☎</td><td>후원
☎</td></tr>
<tr><td rowspan="6">전 시
개 요</td><td>전 시 명</td><td colspan="2">제 목:
부제목:</td></tr>
<tr><td>전시장르</td><td colspan="2">☐ 개인전 ☐ 단체전 ☐ 공모전 ☐ 기타
☐ 서예 ☐ 서양화 ☐ 한국화 ☐ 조각 ☐ 공예/디자인 ☐ 사진 ☐ 기타( )</td></tr>
<tr><td>개 막 식</td><td colspan="2">20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td></tr>
<tr><td>입 장 료
징수유무</td><td colspan="2">☐ 유료 ☐ 무료</td></tr>
<tr><td>작품판매
유 무</td><td colspan="2">☐ 유료 ☐ 무료</td></tr>
<tr><td>문의처</td><td colspan="2">☎ E-mail:</td></tr>
<tr><td>작가 및
단체소개</td><td colspan="3"></td></tr>
<tr><td>전 시
작품내용</td><td colspan="3"></td></tr>
<tr><td>작품수량
및
규모 등</td><td colspan="3"></td></tr>
<tr><td>첨 부</td><td colspan="3">☐ 전시 상세 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사본
☐ 기타 전시관련 서류</td></tr>
</table>

［별표 3］ 〈개정 2006. 4. 21〉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사용허가서

신청인	단 체 명 (사용자)			
	주 소	우편번호:		
	대표이름		전화번호(대 표)	
	대표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담당자)	

□ 신청내용

○ 신청시설:

○ 신청기간:

○ 신청목적(공연, 행사, 교육, 전시 내용):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전 라 북 도 지 사

［별표 4］ 〈개정 2006. 4. 21〉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사용허가 대장

허가 번호	허가 일자	사용기간		사용목적	사 용 자		사용료		비 고 (접수번호)
		사용장소	사용일자		주 소	성명	계약금	잔 액	

［별표 5］ 〈개정 2006. 4. 21〉 접수번호: 호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사용(변경·추가·취소) 신청서

신청인	대관승인번호	제 호	
	공연(행사, 교육, 전시)명		
	사용자이름		
	전화번호		
	주 소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사용일시		
	기본시설		
	부대설비		
	보조인력		
사 유		(상세히 기재바랍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추가·취소)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 라 북 도 지 사 귀 하

［별표 6］ 〈개정 2006. 4. 21〉 접수번호: 호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사용료 감면신청서

신청인	단체명(사용자)			
	주 소	우편번호 :		
	대표이름		전화번호(대 표)	
	대표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담당자)	
공연(행사, 교육,전시)명				
주요 내용				
사용일시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 회 시간)		출연 및 참석예정 인원수	
사용시설	기본시설			
	부대설비			
감면신청사유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별표 7〕 〈개정 2006. 4. 21〉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사용 불가 통지서

신청인	단 체 명 (사용자)			
	주 소	우편번호:		
	대표이름		전화번호(대 표)	
	대표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담당자)	

□ 신청내용

○ 신청시설:

○ 신청기간:

○ 신청목적(공연, 행사, 교육, 전시 내용):

□ 불가사유

○

○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을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전 라 북 도 지 사

［별표 8］ 〈개정 2006. 4. 21〉

입장권 검인 신청서

○ 공 연 명:

○ 공연일자:

○ 단 체 명: (전화:)

○ 대 표 자:

○ 사용시설:

○ 판매기간:

○ 입장권 판매 검인내역

구분 / 입장권	검 인 요 청		비 고
	수 량	금 액	
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 대 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장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연락처:
성 명: (인)

전 라 북 도 지 사 귀 하

［별표 9］ 〈개정 2006. 4. 21〉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사용(변경·추가·취소) 허가서

신청인	단 체 명 (사용자)			
	주 소	우편번호 :		
	대표이름		전화번호(대 표)	
	대표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담당자)	

□ 신청내용

○ 신청시설:

○ 신청기간:

□ 사유(조건)

○

○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추가·취소)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전 라 북 도 지 사

[별표 10] <개정 2006. 4. 21>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수탁 운영 신청서

<table>
<tr><td>법인(단체)명</td><td colspan="2"></td><td>대 표 자</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2"></td><td>전 화 번 호</td><td colspan="2"></td></tr>
<tr><td>설립년월일</td><td colspan="2"></td><td>인가기관 및
인 가 번 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법 인(단 체)
소 유 재 산</td><td>토 지</td><td>건 물</td><td colspan="2">기 타</td><td>총가액(대장가)</td></tr>
<tr><td>평</td><td>평</td><td colspan="2"></td><td>천원</td></tr>
<tr><td>법 인(단 체)
설 립 목 적
(정관기준)</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4">법인(단체)
운영사업장
(시설)현황</td><td>사 업 장
(시설)명</td><td>대표자성명</td><td>허가번호</td><td>소 재 지</td><td>설치연도</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수탁운영 하고자 별지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단체) (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2.
3.
4.
5.

［별표 11］ 〈개정 2006. 4. 21〉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수탁 운영 연장 신청서

<table>
<tr><td>법인(단체)명</td><td colspan="2"></td><td>대 표 자</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2"></td><td>전 화 번 호</td><td colspan="2"></td></tr>
<tr><td>설립년월일</td><td colspan="2"></td><td>인가기관 및
인 가 번 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법 인(단 체)
소 유 재 산</td><td>토 지</td><td>건 물</td><td colspan="2">기 타</td><td>총가액(대장가)</td></tr>
<tr><td>평</td><td>평</td><td colspan="2"></td><td>천원</td></tr>
<tr><td>법 인(단 체)
설 립 목 적
(정관기준)</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4">법인(단체)
운영사업장
(시설)현황</td><td>사 업 장
(시설)명</td><td>대표자
성 명</td><td>허가번호</td><td>소 재 지</td><td>설치연도</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6">「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수탁운영 기간을 연장하고자 별지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단체) (인)

전라북도지사 귀하</td></tr>
<tr><td colspan="6">첨부서류
1.
2.
3.
4.
5.
6.</td></tr>
</table>

[별표 12] 〈개정 2006. 4. 21〉

계 약 서

전라북도지사 (이하 "갑")와 사용자 (이하 "을")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공연장 또는 전시실 등의 사용과 관련하여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을 증빙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쌍방 기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1. 계약내용

가. 사용시설: (승인번호)
나. 사용일시: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일 회)
다. 공연전시명:
라. 공연시간: (전시는 개막행사시간)
마. 입 장 료: (인터넷판매 여부 회원할인 %)
바. 주관주최:
사. 대 관 료: 원

구 분	금 액	납부시기	비 고
계약금			
잔 금			
합 계			

2. 준수사항

가. 특별한 사유없이 지정기한 내 계약금 미납 시 자동으로 대관이 취소됩니다.
나. 잔액은 약정한 기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 시는 이후 대관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다. 계약된 공연시간을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라. 모든 공연(유·무료)은 지정좌석제를 준수하여야 하며, 티켓은 사전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홍보물 제작 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로고 및 전라북도 로고 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인터넷 판매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유료회원 할인율은 처음부터 적용하여 판매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금 미납상태에서 티켓판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갑" 전라북도지사 (인)
"을" 주 소:
단체명: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